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과 장 김정균	042-481-5258
	산업재산활용과	사무관 김혜숙	042-481-5807
		2017년 9월 21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9월 20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민간이 지식재산(IP) 금융을 주도한다

- 우수 민간 가치평가기관, 발명의 평가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민간의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경쟁체제를 통한 가치평가 품질 제고를 위해 9월 20일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민간기관 2곳(주나이스평가정보, (주)이크레더블)을 추가 지정한다고 고시하였다.

발명의 평가기관은 IP의 가치금액 산정을 위한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평가결과는 은행에서 IP를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시행하거나 투자기관에서 투자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최근 IP 금융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대출·투자 등 용도별 평가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요구되면서, 평가기관 역시 민간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초부터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및 외부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평가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주)나이스평가정보, (주)이크레더블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게 되었다. 참고로 특허청은 '15년에 민간기관 2개(특허법인 다래, (주)웍스), '16년에 민간기관 1개(특허법인 다나)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주)나이스평가정보, (주)이크레더블은 금융감독원 지정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 신용등급을 주로 산출하는 TCB 기관은 현재 6곳으로 이 중 (주)나이스평가정보, (주)이크레더블은 이번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통해 IP 담보대출, IP 투자 등을 위한 가치평가도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 두 기관은 향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서 축적하게 될 IP 가치평가에 대한 노하우를 기술신용등급 산출에도 활용하는 등 기술금융과 IP 금융 간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청은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이미 지정된 민간기관을 기술평가기관에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의 기술평가기관은 공인된 감정기관으로 평가결과가 법원·국세청 등에서 공식자료로 인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특허청을 추가한 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간 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해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심의를 거쳐 특허법인 다래, 특허법인 다나를 추가로 기술평가기관에도 지정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이처럼 발명의 평가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IP 가치평가시장 활성화, IP 가치평가 품질 제고, 민간 중심의 IP 금융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중심의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IP 가치평가의 품질 및 신뢰성 제고는 선결 조건”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기술을 포함해 특허에 대한 고품질 가치평가를 제공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사업화 성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김혜숙 사무관(☎ 042-481-5807)에게 연락 바랍니다.

[붙임1] 특허청 고시

발명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 고시

평가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로 추가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특허청장

1. 추가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신규로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다음의 기관을 2017년 9월 20일부터 유효한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 다 음 -

평가기관	평가 가능 분야
(주)나이스평가정보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주)이크레더블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별첨 1] 기존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

평가기관	평가 가능 분야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에 관한 기술평가 (금속재료,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중전기기, 의료기기, 가정용기기 및 전자용기기, 계측기기, 정밀화학, 고분자재료, 화학공정, 화학제품,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생물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세라믹재료)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에 관한 기술평가(금속재료,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정밀생산기계,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산업/일반기계, 정밀화학, 고분자재료, 화학공정, 화학제품,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세라믹재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에 관한 기술평가(금속재료,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정밀생산기계,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요소부품, 로봇/자동화기계, 산업/일반기계, 나노·마이크로기계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광응용기기, 반도체장비, 중전기기, 의료기기,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전기전자부품,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계측기기, 영상/음향기기, 전지, 디스플레이, 시스템H/W, 시스템응용H/W, 응용S/W, 정보기술S/W, 시스템S/W, 통신기기, 통신부품, 고분자재료, 화학공정,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생물소재/제품, 세라믹재료)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에 관한 기술평가(금속재료,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요소부품, 조선/해양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의료기기, 전기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정밀화학, 섬유제품, 고분자재료, 화학제품,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생물소재/제품, 화학공정, 세라믹재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에 관한 기술평가(작물재배, 축산, 농산물 가공품, 농산물 가공 외 농업관련 제조, 농업기계, 농업토목, 환경, 수질, 농업생명공학, 농업관련 서비스, 영림 및 벌목, 임산물 채취,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목재 및 나무제품 외 임산물 가공품 제조, 임산물 가공 외 임업관련 제조, 임업 관련 서비스, 어로, 양식, 수산물 가공(식료품 제외), 수산물 가공 외 수산업 관련 제조, 어업 관련 서비스,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 기타 식품 제조, 음료 제조, 식품산업관련 제조, 식품산업관련 서비스) 및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기술보증기금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한국산업은행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한국발명진흥회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특허법인 다래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주)윙스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특허법인 다나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붙임2] 특허청 공고

기술평가기관 지정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특허청장

- 아 래 -

평가기관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특허법인 다나	고승진, 박유연, 진희동, 이세진	114671- 00364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길 11, 신관 4~6층 (역삼동, 광성빌딩)	02-556-5548	http://danapat.com
특허법인 다래	박승문, 조용식	110271- 00099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10층 (역삼동, 한독타워)	02-3475-7701	http://daraelaw.co.kr